

2025년 3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2025년 01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 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게시)합니다.

2025년 4월

창원진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성재

목 차

I. 주요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나. 이사회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3. 정관변경 사항

II. 주요사업추진현황

1. 교육지원사업

2. 경제(유통)사업

3. 신용(금융)사업

4. 기타사업

III. 주요사업추진실적

IV. 재무현황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1. 주요 현황

1. 주요기관 의결사항

가. 총회(대의원회)

개최년월일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5.02.10.	57	제1호안 : 2024년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 제2호안 : 정관 개정(안) 의결의 건 제3호안 : 임원(조합원인 이사) 선출의 건 제4호안 : 조합원이 아닌 이사(사외이사) 선출의 건

나. 이사회

개최년월일	참석인원	주요 의결사항
2025.01.21.	11명	제1호안 : 차입금 최고한도 조정의 건 제2호안 : 2025년 동일인당 대출한도 조정의 건 제3호안 : 임원 선거일 지정의 건 제4호안 : 고정자산(부동산) 취득 의결의 건 제5호안 : 임원 자기외상거래 승인의 건 제6호안 : 간부직원 임면의 건 제7호안 : 2024년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안) 심의의 건
2025.02.14.	12명	제1호안 : 경제사업 미수금 무이자 외상공급기간 책정의 건 제2호안 : 경제사업 취급수수료를 책정의 건 제3호안 : 경제사업 출하장려금률(수수료율) 책정의 건 제4호안 :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의결의 건 제5호안 : 상임이사 성과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자 구성의 건
2025.02.26.	12명	제1호안 : 인사, 급여 관련 제규정 개정의 건 제2호안 : 임직원 신원보증보험 가입금액 상향의 건 제3호안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제4호안 : 대의원 선거일 지정의 건 제5호안 : 조합장 직무대행 순서 및 방법 결정의 건
2025.03.18.	12명	제1호안 : 신규조합원 가입자격 심사 및 승인의 건 제2호안 : 고정자산(토지) 취득금액 변경의 건 제3호안 : 업무용 고정자산 취득의 건 제4호안 : 2025년 출하선급금 지급기준 승인의 건

2. 사무소 및 인원 현황

가. 사무소 현황

사무소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고
창원진동농협 본점	5179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654	055)271-2021	
창원진동농협 진동지점	5179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618 105호(더원금강빌)	055)271-8607	
창원진동농협 주유소	5179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658	055)271-0220	

나.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전분기	당분기	증감내역	비 고
임원	조 합 장	1	1	0	
	(비 상 임) 감 사	2	2	0	
	상 임 감 사	0	0	0	
	(비 상 임) 이 사	7	8	1	
	상 임 이 사	1	1	0	
	소 계 (A)	11	12	1	
정규직	M 급	0	0	0	
	3 급	3	3	0	
	4 급	7	6	-1	
	5 급	6	6	0	
	6 급	1	1	0	
	7 급	0	0	0	
	기 능 직	8	8	0	
	생 산 업 무 직	0	0	0	
	업 무 직	0	0	0	
	소 계 (B)	25	24	-1	
	비정규직	계 약 직	0	0	0
기 간 제 근 로 자		22	22	0	
시 간 제 업 무 보 조 원		0	0	0	
파 트 타 이 머		0	0	0	
촉 탁		0	0	0	
소 계 (C)		22	22	0	
총 계 (B + C)	47	46	-1		
총 합 계 (A + B + C)	58	58	0		

3. 정관변경 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조합장 선거일 (§ 65⑥)	임기만료연도 3월 中 두번째 수요일	임기만료연도 3월 中 첫번째 수요일	
선거인 명부 (§ 72)	<p>조합은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시 선거인명부 등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p> <p><신 설></p> <p>선거인명부열람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11일까지 ※ 4일간 열람</p> <p><신 설></p> <p><신 설></p>	<p>조합은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시 선거인명부 등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위원회에 제출</p> <p>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전산자료 복사본 제출 시 선거인명부등본 미제출 가능</p> <p>선거인명부열람기간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 매일 오전9시~오후6시 (공휴일 포함)</p> <p>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 30일(재· 보궐선거의 경우 그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조합원명부 정비</p> <p>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시 조합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가능</p>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 74②, § 75④, 별표)	<p><신 설></p> <p><신 설></p>	<p>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경찰서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및 후보자등록시 범죄경력 제출</p> <p>관할위원회는 필요 시 제출된범죄경력에 대해 관할검찰청장에게 조회 가능</p>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 (§ 76①)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때	<p>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발견된 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선거권 없음 - 후보자등록 관련 서류 미제출시 - 범죄경력 미게재 선거공보 제출 시 또는 범죄경력 서류 미제출 시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선거운동 주체 (§ 77의2 ①, § 77의 9, § 77의10)	후보자 <신 설> <신 설> <신 설>	후보자 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 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 예비후보자(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신 청 가능) 활동보조인(장애인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경우) -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조합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중 지정하는 1명	
선거공보 (§ 77의3)	<신 설>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 거인에게 발송 선거인은 선거공보 관련 이의제기 가능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선거공보 미제출 시 범죄경력서류 별도 제 출) 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는 선거 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 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공보 관련 이의제기 가능	
선거벽보 첨부장소 (§ 77의4)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및 관할위원회와 조합이 협의한 장소	
정보 통신망 이용 (§ 77의7)	후보자는 조합이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 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후보자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 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 로 선거운동 가능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 77의 11)	<신 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절차 - 후보자가 조합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 조합은 제공 요청 전 조합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사실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는 사실 고지(조합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 를 밝힌 경우제공 불가) - 조합은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 업자에게 제공 요청 - 조합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신 청 후보자 및 다른 후보자에게 제공 가능 후보자의 금지행위 -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비용부담 주체 : 조합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공개행사 정책발표 (§ 77의 12)	<신 설>	(예비)후보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공개행사에서 정책 발표 가능 - 조합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매주 공개행사 일시와 소견 발표 가능시간 공고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적 용대상 (§ 77의14 I, III)	선거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및 그 가족 <신 설>	선거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선거권이 있는 자 및 가입신청을 한 자) 및 그 가족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금품 제공 등의 행위를 한 자	
기부 행위가 제 한되는 선 거인 범위 (§ 77의20 I)	선거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및 그 가족	선거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조합에 가입되어선거권이 있는 자 및 가입신청을 한 자) 및 그 가족	
기부행위 로 보지 않 는 직무상 의례적 행 위 (§ 77의21 ①)	기관· 단체· 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 물품을 그 기관· 단체· 시설의 명의로 제공(화환· 화분제외)하는 행위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화환· 화분제외)하는 행위	기관· 단체· 시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 물품을 그 기관· 단체· 시설의 명의로 제공(화환· 화분포함)하는 행위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화환· 화분포함)하는 행위	
기부행위 명의표시 방법 (§ 77의21 ②)	<신 설>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함 -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 * 종전의 대상· 범위 등을 법령· 정관 등의 제· 개정 없이 확대 변경 시, 조합장 업적홍보 등 부가 시	
기부행위 제한기간 (§ 77의 22)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동시조합 장선거 투 표소 설치 기준 (§ 79의2)	읍· 면· 동마다 1개소씩 투표소 설치· 운영 - <신 설>	읍· 면· 동마다 1개소씩 투표소 설치· 운영 -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투표소 설치 가능	
투· 개표 참관인 자 격 (§ 81①)	선거인	조합원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조합사업 승인근거 법령정비 (§ 51 X 비고)	농협법 § 57① X 및 농협법시행령 § 51② I 에 따라 중앙회장 승인 필요	농협법 § 57① X 및 농협법시행령 § 51① I 에 따라 중앙회장 승인 필요	농협법 시 행령 개정 사항 반영
(준) 조합원 가입신청 (§ 10① II, § 16① II)	가입신청서에 가구원수 기재	가입신청서에 가구원수 미기재	농협법 시 행 규칙 개정 사항 반영
투표소 설치구역 관련 근거 법령정비 (§ 79의2①)	「지방자치법」 § 4의2	「지방자치법」 § 7	지방 자치법 개 정 사항 반영
선거운동 관련 용어정비 (§ 98의2 ⑤)	사위의 방법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농협법 개정 사항 반영
정관 제66 조(선거관 리위원회 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좌동 ② 위원회는 이사회가 조합원(임직원은 제외한다.)과 선거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p> <p>1~11. (생략)</p> <p>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항목 중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p> <p>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3,453천원 이상</p> <p>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 적금의 평균잔액 : 3,380천원 이상</p> <p>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5,645천원 이상</p> <p>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24천원 이상</p>	<p>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p> <p>1~11. 좌동</p> <p>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 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항목 중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p> <p>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474만원 이상</p> <p>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 적금의 평균잔액 : 2,255만원 이상</p> <p>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1,590만원 이상</p> <p>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3만원 이상</p>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 122조(자격제한 등)	<p>①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p> <p>1. (생략)</p> <p>2.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4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p> <p>3.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항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 (가목은 필수이며, 나,다,라 목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함)</p> <p>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104만원 이상</p> <p>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 적금의 평균잔액 : 101만원 이상</p> <p>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169만원 이상</p> <p>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0.7만원 이상</p>	<p>① 좌동</p> <p>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p> <p>1. 좌동</p> <p>2. 선거일공고일 현재 조합에 대하여 500좌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p> <p>3.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항목 중 가목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가목을 제외한 각 목의 기준금액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 (가목은 필수이며, 나,다,라 목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여야 함)</p> <p>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189만원 이상</p> <p>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금, 적금의 평균잔액 : 902만원 이상</p> <p>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636만원 이상</p> <p>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1.2만원 이상</p>	
정관 제 101조(선거방법)	<p>① 이사는 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p> <p><추 가></p> <p>② 제1항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① 이사는 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할 이사의 수는 조합원수, 조합구역, 지세, 교통 기타의 조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배분할 수 있다.</p> <p>1. 전체지역 여성이사 1명</p> <p>2. 우산지역 이사 1명</p> <p>3. 요장지역 이사 1명</p> <p>4. 석문지역 이사 1명</p> <p>5. 진동리, 사동리, 교동리지역 이사 3명(여성이사 1명 포함)</p> <p>합계 7명(여성이사 2명 포함)</p> <p>② 제1항의 이사를 선출할 때에는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정관 제46조(대의원회)	① (생략)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58명(여성대의원 18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고 현 2인 4~6. (생략) 7. 사동2구 2인(1인) 8~13. (생략) 14. 성 산 2인 15. 요장1구 2인(1인) 16~19. (생략) 20. 도 만 2인(1인) 21. 교 동 4인(1인) 22. 야 촌 2인(1인) 23. (생략) 24. 입 곡 2인 25. (생략) 26. 동 전 2인(1인) 27. (생략) 계 57인(18인)	① 좌동 ② 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56명(여성대의원 18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고 현 2인(1인) 4~6. (생략) 7. 사동2구 1인 8~13. (생략) 14. 성 산 2인(1인) 15. 요장1구 1인 16~19. (생략) 20. 도 만 2인 21. 교 동 4인(2인) 22. 야 촌 1인 23. (생략) 24. 입 곡 2인(1인) 25. (생략) 26. 동 전 3인(1인) 27. (생략) 계 55인(18인)	
조합장 선출방식 변경 시기 (§ 54① 비교)	<신 설>	조합장 선출방식 변경은 조합장임기만료일 직 전년도 12월까지가능	
조합장 선거 공고 (지역§ 71· 72)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의 공고 주체 - 관할위원회(선거일 전 20일)	선거인명부 열람 장소 및 기간의 공고 주체 - 조합(선거일 전 20일)	
임원의 임기 (§ 55)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 : 전임자의 잔임기간	보궐선거· 재선거에 따른 임원의 임기 : 전임자의 잔임기간	
임원의 결격사유 중 사업이용 실적 관련 (§ 56)	사업이용실적 변경시 경과규정 -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임기만료 전까지는 종전의규정 적용 <신 설>	사업이용실적 변경시 경과규정 - 개정규정 의결 후 1년이경과한 날부터 시행 임원의 사업이용실적 확인 시점 - 6월말· 12월말 단, 필요시 추가 확인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상임이사 선출방법 (지역§ 114)	1개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 <단서 신설>	단수 또는 복수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 단, 2 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1배를 초과 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 가능	
공고방법 (§ 7)	서면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 등	
준법점검 실시 (§ 143의 2)	<신 설>	중앙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법점검책임자 지정 및 준법점검 실시	
정관 제 114조(선 거절차)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단수 또 는 복수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다만, 선출하려고 하는 상임이사 수와 같은 수의 후 보자를 추천하여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 이 상으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① 의장은 상임이사 선출의안을 상임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작성하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어 단수 또 는 복수의 의안으로 총회에 부의한다. 다만, 선출하려고 하는 상임이사 수와 같은 수의 후 보자를 추천하여 2회 이상 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선출하여야 하는 상임이사 수의 1배를 초과한 수로 추천하여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II. 주요사업 추진 현황

1. 교육지원사업

창립 55주년 기념 사랑의 떡국 나눔행사 실시

- 일시 : 2025.01.06.(월)
- 장소 : 본점 3층 회의실
- 대상 : 진동 지역민

조합원 명절(설날) 기프트카드 지급

- 일시 : 2025.01.13.(월)
- 대상 : 전 조합원

조합원 의료복지카드 지급

- 일시 : 2025.01.14.(화)
- 대상 : 전 조합원

조합원 자녀 고교 졸업장학금 지급

- 일시 : 2025.01.21.(화)
- 대상 : 조합원 자녀 13명

정월대보름 지역 행사 지원

- 일시 : 2025.02.12.(수)
- 장소 : 태봉천 문화마당

조합원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 가입일시 : 2025.03.24.(월)
- 대상 : 조합원 중 가입 희망자(약 560명)

2. 경제(유통)사업

구매사업 934백만원, 전년동기(1,093백만원) 대비 14.50%p 하락

-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창원진동농협 주유소 옆 영농자재센터를 운영중이며, 자재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농자재를 추가하여 판매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이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매사업 1,802백만원, 전년동기(3,179백만원) 대비 43.32%p 하락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사업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조합원님들의 수익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하나로마트사업 2,408백만원, 전년동기(2,412백만원) 대비 0.16%p 하락
 - 매출이익률 및 재고회전율을 적정하게 유지시켜 수익률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다양한 행사와 비대면 홍보 활동을 하는 등 매출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신용(금융)사업

- 상호금융예수금 잔액
 - 211,242백만원 달성, 전년동기(207,854백만원) 대비 1.63%p 성장
- 상호금융예수금 평잔
 - 207,958백만원 달성, 전년동기(197,720백만원) 대비 5.18%p 성장
- 상호금융대출금 잔액
 - 127,387백만원 달성, 전년동기(136,768백만원) 대비 6.86%p 하락
- 상호금융대출금 평잔
 - 136,707백만원 달성, 전년동기(153,117백만원) 대비 10.72%p 하락
- 총보험료
 - 1,188백만원 달성, 전년동기(701백만원) 대비 69.64%p 성장

Ⅲ. 주요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간계획 (A)	'25년3월말 (B)	달성률 (C=B/A)	전년동기 (D)	전년동기 대비		전년도말 (E)	전년도말 대비		
					증감	성장률		증감	성장률	
경 제 사 업	23,115	5,167	22.35	6,710	-1,543	-22.99	24,289	-19,122	-78.73	
판 매	8,502	1,802	21.19	3,179	-1,377	-43.32	9,645	-7,843	-81.32	
구 매	4,201	934	22.24	1,093	-158	-14.50	4,514	-3,580	-79.30	
마 트	10,326	2,408	23.32	2,412	-4	-0.16	10,028	-7,619	-75.98	
가 공	0	0	0.00	0	0	0.00	0	0	0.00	
기 타	87	23	26.09	26	-3	-12.06	102	-80	-77.88	
상 호 금 용 예 수 금	잔 액	220,980	211,242	95.59	207,854	3,388	1.63	205,496	5,746	2.80
	평 잔	210,170	207,958	98.95	197,720	10,238	5.18	206,035	1,923	0.93
상 호 금 용 대 출 금	잔 액	143,437	127,387	88.81	136,768	-9,381	-6.86	142,120	-14,733	-10.37
	평 잔	138,852	136,707	98.46	153,117	-16,410	-10.72	132,413	4,294	3.24
보 험 료	2,127	1,188	55.87	701	488	69.64	2,000	-812	-40.58	

※ 경제사업 기타실적은 생물자산, 창고, 이용, 운송 매출액 및 수수료 실적 등의 합계임

IV. 재무 현황

1.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자 산		부채 및 자본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I. 유동자산	4,915	I. 유동부채	11,093
1. 현 금	997	1. 외상매입금	106
2. 외상매출금	214	2. 단기차입금	5,338
3. 재고, 생물자산	855	3. 기타유동부채	5,649
4. 기타 유동자산	2,849	II. 금융업예수금	211,242
II. 금융업예치금	96,898	III. 금융업차입금	2,385
III. 금융업대출채권	125,398	IV. 보험(공제), 농작물 보험부채	
IV. 보험(공제), 농작물 보험자산		V. 비유동부채	207
V. 비유동자산	14,248	1. 장기차입금	
1. 투자자산	4,709	2. 기타비유동부채	207
2. 유형자산	8,738	부채합계	224,926
3. 무형자산	22	I. 출자금	9,254
4. 기타비유동자산	780	II. 자본잉여금	3,100
		III. 자본조정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V. 이익잉여금	4,178
		자본합계	16,532
자산총계	241,458	부채와 자본총계	241,458

※ 금융업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계수임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

2.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4년 3월말 (A)	'25년 3월말 (B)	증감 (B-A)
영업수익	6,239	5,999	-240
영업비용	4,874	4,423	-451
매출총이익	1,365	1,575	210
신용사업	823	1,006	182
경제사업	542	570	28
판매비와 관리비	1,603	1,611	8
영업손익	-238	-35	203
교육지원사업순비	196	181	-15
영업외손익	13	179	167
법인세차감전손익	-421	-37	384
법인세비용	0	1	1
당기순손익	-421	-38	383

※ 백만원 단위 반올림으로 합계가 불일치할 수 있음